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00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법률의 제명 변경	4
2. 재난 시 소유자등의 임시주거시설 마련	8
3.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사유 법률 상향 규정	11
4. 동물 도살과정에서의 고통 최소화	15
5. 동물의 미용 목적 외과적 수술 금지	18
6. 등록대상동물의 정기적 갱신등록	22
7. 동물사육금지명령 · 긴급격리조치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25
가. 총괄적 검토	25
나. 동물학대범죄 정의 신설	29
다.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신설	33

라.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제도	43
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제도 신설	47
8. 맹견사육허가의 필수적 철회사유 신설	52
9. 동물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57
10. 동물생산업자·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금지 등	60
11.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66
12. 출입·검사 등의 대상 축소 및 동물보호전문가의 점검 참여	69
1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76
14. 부칙에 관한 사항	7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5.

다.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동물권 향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가 이뤄졌으나, 보완해야 하는 점도 있음.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 밖에 재난 발생 시 동물의 보호, 동물도살의 고통 최소화, 등록 대상동물 등록의 갱신제도 도입 등 동물의 보호·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에 있어 현행법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동물이 생존하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의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명도 이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동물의 복지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함.

나.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 신설 등).

마. 시·도지사는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바.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사.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등).

아.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8항 신설).

IV. 검토의견

1. 법률의 제명 변경

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명).

현행	개정안
<u>동물보호법</u>	<u>동물복지법</u>

보호(保護)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피어 돌봄”이고,¹⁾ 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가 “행복한 삶”이라는 점²⁾³⁾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이 단순히 동물에게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보살피는 보호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동물의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복지의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법률의 제명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i) 이론적 측면에서 개정하려는 제명이 법제기준에 적합한지, ii) 실질적 측면에서 개정을 통해 적절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동물복지를 ‘건강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 습성을 표현하고, 고통·두려움·괴롭힘 등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구체화하고도 있음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국회 법제실은 제명과 관련하여 ① 제명이 알기 쉽고 간결한지, ② 제명이 주요 규정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는지, ③ 제명이 다른 법률과 혼동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는 없는지를 유의해야 하며, ④ 가능한 한 우리말 표현으로 하고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도록 법제기준을 정립하고 있음.⁴⁾

이때 개정하려는 제명인 “동물복지법”과 관련해서는 위의 ①・③・④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고, ② 제명이 주요 규정내용을 잘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총 8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은바, 현행법에서도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등 동물의 복지(행복한 삶)에 관련한 규정이 존재함.

【 현행 「동물보호법」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장번호	장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1~§5)	- 목적, 정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6~§8)	-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9~§46)	- 동물의 보호 및 구조(동물학대금지, 동물보호센터 등) - 맹견의 관리(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등)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47~§58)	- 동물실험의 원칙 및 금지사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4)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p.74~75.

장번호	장 제목	주요 내용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59~§68)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운영
제6장	반려동물 영업 (§69~§85)	-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제도 운영
제7장	보칙 (§86~§96)	- 출입·검사제도 및 실태조사·정보공개 - 동물보호관 지정 및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장	벌칙 (§97~§101)	- 벌칙 및 과태료

다만, 그 외 대다수의 규정은 동물의 보호(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잘 보살핌)에 관련한 규정⁵⁾으로 생각되고, 개정안을 통해 개정·신설되는 규정 역시 보호의 측면⁶⁾이 보다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실질적 측면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명이 “동물복지법”으로 개정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동물복지를 달성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행 「동물보호법」의 대다수 규정들은 동물보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단순히 제명 개정만으로는 동물복지 측면을 달성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또한, 동물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 개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인적 기반이 확충되고 사회적 인식이

5) 동물학대 금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제도, 유실·유기 동물과 피학대동물 등의 구조·보호, 동물 실험 원칙,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제도 등

6)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 금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 명령·긴급격리조치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동물생산·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종사 금지 등

개선이 동반될 필요성도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동물복지를 달성하는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특히 「동물보호법」이 중점을 두고 있는 동물보호 측면 역시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소극적 형태의 “보호” 관점을 넘어 적극적인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 제명 변경만으로는 실익이 다소 낮고, 실질적인 동물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정책 확충,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측면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재난 시 소유자등의 임시주거시설 마련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의 내용에 재난 시 동물 소유자등의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u>사항</u>	2. ----- --- <u>사항(재난 시 소유자등의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보호조치를 포함한다)</u>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동물 소유자등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9조에서는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⁷⁾

7) 「동물보호법」 제9조(적절한 사육·관리)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피 이후에 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소유자등에게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체계에서 재난·재해 관련 사항의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등(이재민, 일시대피자 및 재해로 인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⁸⁾

8) 「재해구호법」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하여 재해 발생시 ① 반려동물을 구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② 구호기관에게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주거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개정하려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884)”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난 상황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시설은 다수의 이재민이 거주하는 시설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수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사유 법률 상향 규정

개정안은 현재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예외사유에 관한 위임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 -----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 ----- -----행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 ----- ----- 행위(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3. ----- ----- ----- -----행위(동물의 처리에 대한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이행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 ⑤ (생략)	<u>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u> <u><삭제></u>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정당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제10조제4호).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②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⁹⁾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임규정을 삭제하되, 이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분배하고

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10조제1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지사항은 행위의 잔인성 및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유와 무관하게 금지’되는 행위인데, 개정안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금지의 성격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는 허용’하는 행위로 변화할 수 있음.

둘째, 위임근거의 삭제는 법령 규정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금지행위의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관련 위임근거를 삭제하는 경우, 예외사유의 종류 및 내용을 법률에서만 규정하게 되어 이를 개정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오직 국회가 정한 한정적이고 정당성 높은 사유만을 예외사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예외사유를 모두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환경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개정대상인 현행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점¹⁰⁾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시행규칙상의 예외사유를 현행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각 상향하는 형태로서, 현행 동물보호법령상 조문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4. 동물 도살과정에서의 고통 최소화

개정안은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u>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u>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 ----- ----- --- <u>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u>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u>	<삭제>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의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11)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경우(가축 도살 등)와 「가

11)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가스법, 약물 투여법

2. 전살법(電殺法), 타격법(打擊法), 총격법(銃擊法), 자격법(刺擊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경우(가축 살처분 등)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3조제3항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대해서도 동물의 도살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동물의 도살과정에서도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해당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도살의 사전적 정의¹²⁾인 “짐승을 잡아 죽이다”¹³⁾의 뜻을 고려하면 현행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바, 개정안의 수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인도적 도살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살과정에서는 불필요한 고통뿐만 아니라 공

12) 「동물보호법」을 비롯하여 관계 법률에서는 “도살”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음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포·스트레스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한편, 현행법은 “고통의 최소화”를 제13조제2항에서 처음 규정하고 있어, 그 방법인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역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고통의 최소화”를 안 제13조제1항에서 처음 규정하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안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동물의 미용 목적 외과적 수술 금지

개정안은 미용을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수술) <u>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u>	제14조(동물의 수술) <u>누구든지 미용을 목적으로 거세-----</u> <u>-----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u>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방법을 수의학적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동물 또는 품종의 경우 단미(斷尾, 꼬리를 자름)·단이(斷耳, 귀를 자름) 수술 등 특정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수술이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동물보호 및 복지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외과적 수술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과 관련하여 그 목적까지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의료 목적이 아

년 미용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동물실험 등의 목적 외에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¹⁴⁾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 역시 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로 금지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적어 보인다는 입장이고,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의사의 수의학적 소견에 따라 행해진 외과적 수술이 미용 목적의 수술로 오해될 경우가 염려된다¹⁵⁾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제상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별도의 항 없이 두 개의 문장으로 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임.

14)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법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인 경우

2. 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인 경우

3.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 경우

15) 특정 품종견에서 출생 시부터 가지는 큰 귀와 처진 귀로 인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외이도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TNR(중성화)사업 후 구분을 위한 귀 표식 등

법제이론적 관점에서, 하나의 조는 둘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①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보충 설명할 때에는 앞 문장을 전단(前段), 뒤 문장¹⁶⁾을 후단(後段)으로 지칭하고, ② 뒤 문장이 앞 문장의 예외를 규정할 때에는 앞 문장을 본문(本文), 뒤 문장¹⁷⁾을 단서(但書)로 지칭함.¹⁸⁾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 앞 문장은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뒤 문장은 의료 목적의 외과적 수술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 뒤 문장이 앞 문장을 보충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단과 후단의 관계가 아니고, ② 뒤 문장이 앞 문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문과 단서의 관계도 아닌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i)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두 문장을 각각 규정하거나, ii) 개정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두 문장이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해당하도록 수정하는 등의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임.

둘째, 개정안은 외과적 수술의 목적을 새로이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그 구분과 관련한 누락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은 모든 외과적 수술에 수의학적 방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미용 목적과 의료 목적의 외과적 수술에 대하

16) 일반적으로 “이 경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17) 일반적으로 “다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18)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p.83~84.

여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용과 의료 외에도 외과적 수술의 목적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미용과 의료 외의 목적으로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경우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현행법이 외과적 수술을 수의학적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누락 없이 모든 경우의 외과적 수술에 대하여 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셋째, 안 제14조 본문에서 외과적 수술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나열된 예시 중에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외과적 수술이 존재하는바, 해당 조항이 조 제목처럼 동물의 수술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외과적 수술의 대상인 동물을 추가하는 조문정비가 필요해 보임.

6. 등록대상동물의 정기적 갱신등록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한 경우, 3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 ----- ----- ----- -----하며,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 ----- <u>갱신 절차, 변경신고</u> ----- ----- ----- -----.

현행법은 월령이 2개월 이상인 ①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②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⁹⁾

【 최근 3년간 동물 누적 등록 및 신규 등록 현황 】

(단위: 마리)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 등록 (신규 등록)	2,782,811 (510,004)	3,054,342 (302,597)	3,286,216 (271,173)
개	2,766,250 (500,321)	3,025,859 (290,958)	3,244,234 (257,989)
고양이	16,559 (9,683)	28,483 (11,639)	41,982 (13,184)

주1)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는 없으나,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등록을 받아주고 있음

주2) 누적 등록 마릿수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망으로 말소된 등록 동물이 제외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3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5조제2항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²⁰⁾ 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를

19)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20)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현행법으로도 등록정보의 현행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정보 갱신을 의무화하여 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에서 이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갱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은 낮아보인다는 입장임.

-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7. 동물사육금지명령 · 긴급격리조치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가.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① 동물학대범죄 정의를 신설하고,²¹⁾ ②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신설하며,²²⁾ ③ 현행법상 동물의 격리 규정을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제도로써 구체화하고,²³⁾ ④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제도를 신설하려는²⁴⁾ 것으로서,

그 취지는 동물의 긴급격리 · 임시사육금지 · 사육금지를 통하여 동물학대범죄를 지은 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073)”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심사결과 수정가결된 후 2022년 4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에 개정안의 내용인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등의 규정이 포함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심사시 법원행정처에서 “수범자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

21) 안 제2조제9호의2 신설

22)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신설

23) 안 제34조제1항

24) 안 제34조의3 · 제34조의4 및 제34조의5 신설

유를 제한하는 등 동물학대행위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처분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결과,²⁵⁾ 이것이 삭제되어 수정가결된 바 있음.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명령·조치 중에서 ① 피학대동물을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하는 긴급격리조치와, ②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피학대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이하 “사육등”이라 한다)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모두 해당 피학대동물만을 긴급격리 및 사육등 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의 경우 사육등이 금지되는 대상 동물의 범위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에 따라 선고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동안 동물과 관련된 직업 자체를 선택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세 개의 명령·조치는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간의 순서에 따라, ① 긴급격리조치를 통하여 피학대동물을 긴급하게 격리하고, ②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통하여 재판 등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학대동물의 사육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후,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최종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범위 동물의 사육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도이므로,

25) 법제사법위원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22.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개별 명령·조치에 대하여 각각 기본권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명령·조치가 없게 됨에 따라 제도적 완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행위의 재발방지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사육금지명령 등에 따른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및 제도의 실효성 담보 등을 위한 면밀한 검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동물사육금지명령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는 장래의 위협에 대하여 특별예방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재로서,

① 동물의 사육등 행위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전면 금지하여 기본권 제약 정도가 매우 강한 반면, 그 요건으로는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만을 규정하고 있고, ② 학대 목적이 없는 단순 보호, 관리 목적의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어, 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 상당히 크며, ③ 현행법을 통해서도 이미 동물 학대사범에 대하여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²⁶⁾을 할 수 있는바,

26) 「동물보호법」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동물학대행위자등에게 부과하는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에도 동물사육금지명령 등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도입할 실효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등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 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다.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9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의 죄를 지은 자

가. 등록대상동물,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⑦ 형벌과 병과하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나. 동물학대범죄 정의 신설

개정안은 동물사육금지명령·긴급격리조치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신설하는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명령 및 조치의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 현행법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를 “동물학대범죄”로 지칭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동물학대범죄”란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를 말한다.</u>

현행법 제10조는 조 제목이 “동물학대 등의 금지”로서, i)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ii)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iii)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거나, iv) 동물을 유기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거나, v) 동물을 도박 목적, 경품, 영리 목적의 대여 등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

고 있음.²⁷⁾

27)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이 동물학대범죄로 지칭하려는 현행법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²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²⁹⁾의 범죄는 현행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이상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 개정안의 동물학대범죄 정의에 포함되는 현행법 제10조 위반사항 】

조/항	호	벌칙조항	동물학대범죄 정의 포함 여부
제10조 제1항	제1호~제4호	제97조제1항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제10조 제2항	제1호~제4호	제97조제2항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7조제1항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9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조 제4항	제3호	제97조제5항제1호~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X
	제1호 중 맹견 유기, 제2호		
	제1호 중 맹견 외 동물 유기		
제10조 제5항	제1호~제4호		

28)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29)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현행법 제100조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등으로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형벌과 함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함.³⁰⁾

개정안은 이들 범죄를 동물학대범죄로 지칭하여 동물사육금지명령, 긴급격리조치 및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들 명령과 조치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면 함께 수용될 필요성이 있음.

명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00조에서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를 동물학대행위자“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제97조제1항제3호·제4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의 죄는 등록대상동물과 맹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이므로,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동물학대범죄로 지칭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30) 「동물보호법」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가.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나.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다.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신설

개정안은 동물학대범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①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에 따라 검사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 ② 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에 따라 법원이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판결하면, ③ 안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9까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u>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u> <u>제16조의2(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u>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u>②</u>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u>③</u>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u>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하여야 한다.</u> <u>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6조의3(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u>
<u><신 설></u>	<u>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 <u>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u>

현행	개정안
<u><신 설></u>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분을 피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2.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

현행	개정안
	<u>는 대상동물</u>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③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동물사육금지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⑥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

현행	개정안
	<u>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u> <u>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6조의7(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u>
<u><신 설></u>	<u>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대상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동</u>

현행	개정안
	<u>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지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u> <u>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u> <u>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u>

현행	개정안
<신설>	<u>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중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u> <u>제16조의9(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u> <u>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u> <u>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u>

개정안은 ①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동물의 사육등을 금지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② 법원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명령을 선고하고, 판결에 따른 법원과 교도소장등의 조치를 규정하며(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그 집행 내용·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안 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9까지),

그 취지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의 동물에 대한 사육등을 금지함으로써, 동물학대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대상 동물의 사육등 일체를 금지하는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법원행정처는 지난 제21대 국회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우려한바,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대상 동물의 범위에 따라 명령기간 동안 동물의 사육등과 관련한 직업 자체를 선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동물학대범죄라는 주관적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2단계 제한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심사에 있어서는 특정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비례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임.³¹⁾

31) 국회 법제실,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헌법과 법제」 제15호, 2022.

□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의 형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제한의 강도가 높을수록 위헌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단계이론을 채용하고 있다.

1) 1단계(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 직업선택은 허용하되, 영업시간·장소·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 직업활동의 방법이나 태양을 규율

한편,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검사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 신청의 신청권자와 관련하여 법률 내부적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4조의4에서 검사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청구신청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의 신청을 요청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두 제도가 유사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청구 신청의 방식의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화된 비례심사로서 공익상 합리적인 이유를 검토- 다만, 실질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이라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검토.2) 2단계(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등에 따른 결격사유, 전문자격제도 등이 해당- 엄격한 비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의 보호 검토3) 3단계(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영금지, 겸직금지 등이 해당- 엄격한 비례심사로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의 보호와 명백·확실한 위협의 방지 검토 |
|--|

라.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제도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학대동물 등의 격리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격리조치를 수행하는 자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재발 방지를 위하여 <u>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긴급격리) ① ----- ----- ----- ----- ----- ----- ----- ----- <u>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하는 조치(이하 “긴급격리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u> -----.
1. ~ 3. (생략) ② ~ 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①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② 소유자등으로부터 동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절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

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²⁾

개정안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제도를 신설하면서 현행법상의 규정을 동물의 긴급격리조치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행위자로서 사법경찰관³³⁾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32)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폭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3)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³⁴⁾

사법경찰관을 긴급격리조치의 행위자로서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안 제34조의3에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학대동물을 긴급격리하고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이루고자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것³⁵⁾인데, 피학대동물을 긴급하게 격리하는 것은 증거 인멸 방지 등의 목적보다는 학대 재발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동물보호법」 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방지를 통한 피학대동물의 보호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긴급격리 조치가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유사 입법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의무를 부여³⁶⁾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34조제1항은 하나의 항에 ①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와 ② 동물의 긴급격리조치라는 두 가지 제도를 함께 서술하여 본문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을 긴급격리조치의 주체로서 포함함에 따라 두 제도의 주체 범위 역시 달라지고 있는바, 의미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제도 신설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동물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의 사육등을 금지하는 임시동물사육금지 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34조의4 및 제3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3(긴급격리조치 후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긴급격리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제34조의4(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4조의5제1항에

현행	개정안
<신설>	다른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34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의5(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①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이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사육 금지명령이 확정된 경우 임시동물 사육금지조치는 해제된다.

현행법 제34조제1항은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학대동물 중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5일 이상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⁷⁾

이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을 도과하였을 때 해당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지닌 학대행위자가 「민법」 제213조³⁸⁾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따라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을 학대행위자에게 반환할 수 밖에 없어 피학대동물의 보호 차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검사가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

37)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38)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① 안 제34조제1항에 따른 긴급격리조치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또는 ② 직권으로 법원에 피학대동물의 사육등을 금지하는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통하여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안 제34조의5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게 피학대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로 약칭하고 있는데,

안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에서 이를 다시 줄여 “임시조치”라는 표현으로 약칭 규정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와 “임시조치” 중 어느 약칭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3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안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검사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4조의4제1항은 검사가 동물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에 대한 규정은 아니므로, 안 제34조의3에서 “제34조의4제1항”이 아닌 “제3

4조의5제1항”을 인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안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안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⁹⁾

넷째, 안 제34조의5의 법원의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결정과 관련하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34조의5제1항은 단순히 법원이 피학대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이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 결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혹은 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에 따른 검사의 청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가 모호해 보이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8. 맹견사육허가의 필수적 철회사유 신설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 ----- ----- <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하여야 한다.</u>
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u>다치게</u>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신설>	1. ----- ----- ----- <u>중상해를 입게-</u> ----- <u>1의2.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u>제1항제1호</u> 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	② ----- <u>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u> ----- ----- -----

현행	개정안
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 단을 준용한다.	-----. ----- -----.

현행법은 맹견⁴⁰⁾사육허가의 철회사유를 ①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이수명령 또는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세 가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모두 임의적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맹견의 위험성에 따른 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격성이 높고 심각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맹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육허가가 철회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철회사유 중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한 경우를 i)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힌 경우와 ii)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로 구분하고,

전자는 현행과 같이 임의적 철회사유로 유지하되, 후자를 반드시 철회해야 하는 필수적 철회사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맹견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0) 2024년 10월 기준 총 2,108마리의 맹견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에 이를 모두 필수적 철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맹견이 ① 사람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와 ② 동물을 공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는 비난가능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현행법 또한 제21조제1항의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③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⁴¹⁾

둘째, 중상해의 기준에 대한 정립이 요구됨.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중상해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필수적 철회사유가 되는 중상해가 어떠한 수준의 상해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① 「형법」에서는 중상해를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41)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고 있고,⁴²⁾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중상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로 보고 있음.⁴³⁾

셋째, 사육허가 철회에 따라 해당 맹견이 인도적인 처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맹견사육허가가 철회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필수적 철회사유가 규정되는 경우, 맹견의 공격 행위가 발생한 경위나 비난가능성 등과 무관하게, 피해자 또는 피해동물의 중상해·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따라 일률적으로 맹견이 인도적인 처리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2)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다만 맹견사육허가 철회는 맹견 소유자 및 맹견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9. 동물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개정안은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행정으로 보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감사원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로서, 그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 실수 등에 대하여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⁴⁴⁾

개정안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물 구조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44) 감사원 적극행정길라잡이 누리집, “https://www.bai.go.kr/proactive/html/adm/adm_overview.do”, 2024. 10. 19. 확인

만큼 그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별도의 면책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은 동물 구조 관련 업무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자체감사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데, 이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규정되어 있음.⁴⁵⁾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첫째, 면책 대상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어떠한 행위를 한 이후 이를 사후적으로 면책받는 구조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행위 시점에서 해당 행위의 면책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 제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극행정이 이어질 우려가 존재함.

개정안의 경우 면책 대상 행위를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로 제시하고 있어, 어떠한 행위가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바, 이를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동물 구조 행위 등으로 명확히 할 수 있어 보임.

둘째, 면책 적용 법률 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재

4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와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라는 두 가지 형태의 감사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자체감사에 대해서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 적용 법률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 동물, 피학대동물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면책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다만 면책의 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동물생산업자·판매업자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금지 등

개정안은 ①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로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 ⑤ (생략) ⑥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되거나 보호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⑦·⑧ (생략)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 ----- ----- -----. 1. 제6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2.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 ⑦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 신고를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현행법은 민간 동물보호단체 현황,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 파악 등 해당 단체의 보호동물 적정관리 유도 등을 통한 관리 사각지대

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신고제를 도입하고, 보호시설의 영리추구 행위 등을 금지하며, 정부·지자체장은 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비교 】

구 분	민간동물보호시설 (비영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직영 센터	위탁 센터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37조	동물보호법 제35조 ⁴⁶⁾	동물보호법 제36조 ⁴⁷⁾
운영 주체	개인·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동물병원 등
운영 현황	142여개소 추정	76개소 (직영71, 시설위탁5)	152개소 (위탁보호152)
운영비	기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 시설위탁: 시·군·구시설을 민간에서 임대·운영하는 경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최근 동물 ‘분양’보다는 ‘입양’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비영리 목적인 보호시설이 아님에도 마치 해당하는 것처럼

46)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7)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른바 ‘신종펫샵’이 생기고 있는데,⁴⁸⁾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①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② 보호시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동물을 이윤추구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보호시설을 사칭하는 신종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입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결격사유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그 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3단계 제한⁴⁹⁾에 해당하는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

48) 연합뉴스TV(2023. 9. 26.) 파양 동물 맡아준다더니... 보호소 탈 쓴 ‘신종펫샵’

49) 국회 법제실, “직업의 자유 제한과 법제적 시사점”, 「헌법과 법제」 제15호, 2022.

는 없는지 엄격한 비례심사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 현행 결격사유와의 균형, 다른 비영리시설 운영자와의 형평성, 민간동물보호시설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공공성 ·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 업무의 공정성을 해결 우려의 중대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지되는 것은 동일인이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과 보호시설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만일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생산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등에 있는 자의 명의로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종팻샵의 편법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수 있음.

셋째,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의 형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제한의 강도가 높을수록 위헌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단계이론을 채용하고 있다.

1) 1단계(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 직업선택은 허용하되, 영업시간 · 장소 ·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 직업활동의 방법이나 태양을 규율
- 완화된 비례심사로서 공익상 합리적인 이유를 검토
- 다만, 실질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이라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검토.

2) 2단계(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범죄 등에 따른 결격사유, 전문자격제도 등이 해당
- 엄격한 비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의 보호 검토

3) 3단계(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 겸영금지, 겸직금지 등이 해당
- 엄격한 비례심사로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의 보호와 명백 · 확실한 위협의 방지 검토

현행법은 보호동물이 20마리 이상인 보호시설의 운영자만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⁵⁰⁾ 개정안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모두에게 보호시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를 넘어서서 비영리 목적으로 20마리 미만의 동물을 보호하는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자 또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동물판매업자 등이 보호시설을 사칭하고 파양된 동물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생산업자의 보호시설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변칙 영업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 동물, 피학대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또는 분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른 개정 방향성으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② 보호시설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소규모 보호시설운영자의 명칭 사용을 고려하면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⁵¹⁾에 보

50) 「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1)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것

호시설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노,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11.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의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 및 제2항은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u>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보호조치⁵²⁾ 중인 동물이 ①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②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③ 기증·분양이 곤란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의사를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³⁾

52)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53)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상의 동물보호센터 외에도,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존재하는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는 달리,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등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하에서는 이를 수행할 수 없어 시설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도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처리사유 및 방법 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취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제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특히 동물 스스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생명보호 등의 공공성 측면을 보다 고려하여, 공공부문(동물보호센터)이 아닌 민간부문(민간동물보호시설)에게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무분별한 인도적인 처리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 생명보호·학대방지의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현행법 제37조제3항⁵⁴⁾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고, ② 현행법 제37조제4항은 앞의 자에 대하여 “보호시설 운영자”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바,⁵⁵⁾ 안 제46조제4항에서 해당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54) 「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55) 「동물보호법」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이하 “보호시설운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출입·검사 등의 대상 축소 및 동물보호전문가의 점검 참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생략)	제86조(출입·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u>	<삭제>
4. 제59조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	<삭제>

현행	개정안
<u>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u> 5.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u>의 장</u> 6.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 <u>산물의 표시를 한 자</u>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 <u>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u> <u>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u> ③ ~ ⑦ (생략) <u><신설></u>	<u><삭제></u> <u><삭제></u> <u><삭제></u> ③ ~ ⑦ (현행과 같음) <u>⑧ 공무원이 제3항 또는 제4항에</u> <u>따라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u> <u>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u> <u>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u> <u>경우 동물보호전문가의 자격·요</u> <u>건·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제86조는 동물보호를 위하여 i)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 조치(제1항), ii) 동물보호시설·동물실험·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반려동물 영업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제2항), iii)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제3항), iv)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제4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중 i) 현행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검사 등의 대상을 동물보호센터의 장(제1호)과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제2호)로 한정하여 그 외의 대상을 삭제하고, ii) 같은 조 제3항 및 제

4항의 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86조제2항에서 개정안이 삭제하려는 대상자들은 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반려동물 영업이라는 「동물보호법」상의 세 가지 제도와 관계된 자들인데,

현행법은 i) 동물실험 제도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고,⁵⁶⁾ ii)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제도는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인증취소를 규정하고 있으며,⁵⁷⁾ iii) 반려동물 영업 제도는 허가·등록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허가·등록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음.⁵⁸⁾

56) 「동물보호법」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57)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제65조(인증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58)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그러므로 해당 세 가지 제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86조제8항에 따른 동물보호전문가의 참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동물보호법」 제90조⁵⁹⁾에 따라 동물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9조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5.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9조제3항 또는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7.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8.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9.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9) 「동물보호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3.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4.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있으므로, 별도로 동물보호전문가의 참여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명예동물보호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위촉하는 자로, 2023년 기준 644명이 위촉되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 2023년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644	114	82	8	16	28	15	6	10	169	43	15	30	42	28	1	23	14

주) 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은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3년간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교육·홍보 상담·지도	동물학대행위 신고·정보 제공	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
2021년	2,931	1,661	213	971	86
2022년	3,238	2,045	98	996	99
2023년	4,068	2,358	93	1,285	3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명예동물보호관은 ①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② 동물보호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③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 있는바,⁶⁰⁾

동물관리 또는 동물보호·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볼 수 있는데,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명예동물보호관이 동물보호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과정 등에서 현행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점검에 참여할 수 있다면, 별도의 동물보호전문가가 점검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현행법 제86조제4항⁶¹⁾에서 개정안이 삭제

60) 「동물보호법」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 제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27조(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1) 「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검사 등)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제7호에 따른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제70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제69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하고 있는 현행법 제86조제2항제7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인용구를 삭제하고 직접 서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문 정리가 필요함.

13.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7조 및 제101조).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①·② (생략)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③ ----- ----- -----.
1. (생략)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자
2. ~ 4. (생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u><신설></u>	2.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임시 동물사육금지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	9. 제46조제1항 또는 제4항----- -----

현행	개정안
적인 처리를 한 자 10. ~ 12. (생략) ⑥ (생략) 제101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u>아니한</u> 소유자 5. ~ 7. (생략) <u><신설></u> 8. ~ 26. (생략) ④·⑤ (생략)	----- 10.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4조를 위반하여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한 자</u> 4. ----- -----<u>아니하거나</u> <u>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u> 5.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u> 8. ~ 2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개정안을 통하여 신설되는 규정에 따라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안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안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통하여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③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④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한 자, ⑤ 등록대상동물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 ⑥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개정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7조제5항제9호와 관련한 조문 정비가 필요해 보임. 수의사에 의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 제46조제2항이고,⁶²⁾ 이에 따라 현행법 제97조제5항제9호 역시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⁶³⁾

그런데 개정안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에게도 현행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성요건을 “제4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 변경하고 있는바, 조문정비의 필요가 있어 보임.⁶⁴⁾

62) 「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3)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

64) 가령, 구성요건을 “제46조제2항(제46조제4항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로 할 수 있어 보임

14. 부칙에 관한 사항

개정안은 ① 법률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규정하고, ② 법률의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⑦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⑧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개 정 안

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⑩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은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위하여 사용됨.⁶⁵⁾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등이 법률의 시행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제명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의 인용 조항을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관련 법률을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고, ② 법률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바⁶⁶⁾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65)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21.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4조,⁶⁷⁾ ②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4항⁶⁸⁾ 및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 및 제6조제39호의2⁶⁹⁾에서도 「동물보호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안 부칙 제2조에 이들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임.⁷⁰⁾

66)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 p.908.

6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험동물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8)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6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2의2. 「동물보호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39의2. 제5조제42호의2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70) 안 부칙 제2조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제11항 및 제12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⑦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동물보호법」”을 각각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⑪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⑫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의2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제6조제39호의2 중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427